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 전문기관

- 대구경북 제조업 산업안전지도사 1호 기관

'24. 1.27 부 5명 이상 전 사업장, 관공서, 공공기관 등에 중처법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예방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주) 안전법인 한결

경주시 1호 안전관리전문기관

(주)안전법인 한결 (소개)



대표: 우청호

(석계초 35회, 외동중 37회, 경주고 40회)

- ▶ 산업안전지도사(기계분야)
- ▶ 대기환경기사 / 산업안전기사

現 (주)안전법인 한결 대표

* 안전보건분야 종합 컨설팅

前 한결안전 대표

- * 자율안전확인신고
- * 사업장 위험성평가

前 안전관리전문기관 근무

- * 부울경지역 안전관리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 사업장 위험성평가

前 육군 근무

- * 학군장교(ROTC 34기)
- * 1사단, 수방사, 102여단 등

주소

경북 경주시 외동읍 우박길 79-5,
302호 (문산공단 입구)

연락처

전화 : 054) 776-0542
팩스 : 054) 776-0549
메일 : wch373@naver.com

주요 수행업무

1. 사업장 위험성평가

- * 최초 / 정기 / 수시평가
- * 근로자 100인 이하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인정 지원

2.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3. 사업장 안전관리 위탁

- *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 50인 이하 사업장 중 희망 사업장

4. 안전보건교육

- * 정기 / 특별 / 채용시 교육 등

5. 자율안전확인신고

- * 컨베이어, 파쇄기, 분쇄기, 혼합기,
식품가공기계 등

6.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13개 업종
- * 용해로, 화학·건조설비 등 5종 설비

7. 상생협력사업 컨설팅

8. ISO 9001/14001/45001

9. KOSHA-MS 구축

10. 기타 안전보건분야 컨설팅

(주)안전법인 한결 (강점)



『대구·경북 최초』 제조업 산업안전지도사 기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많습니다.

그러나, 대구·경북 제조업분야에서 고용노동부 지정을 받고, 산업안전지도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주)안전법인 한결이 최초입니다.

『경주시 최초』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 전문기관

경주는 산업도시로 급성장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는 안전관리 기관이 없어 대구, 포항, 울산 등에 위치한 업체에 안전관리를 100% 위탁하는 실정입니다.

(주)안전법인 한결은 경주·포항·영천·울산 최초 산업안전지도사 안전관리 전문기관입니다.

- ▶ 산업안전지도사 등록 (대구지방 고용노동청 포항지청)
- ▶ 안전관리 전문기관 지정 (대구지방 고용노동청)
- ▶ 안전관리 전문기관 개소 (경주시 외동읍 문산공단 입구)

『산업안전분야 최고 전문가』에 의한 안전관리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분야 최상위의 자격이며, 중처법 확대시행('24.1.27부)에 대비, 안전분야 전문가에 의한 종합적인 컨설팅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 조직을 갖춘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협회 소속으로 기계 / 전기 / 화공 / 건설 분야 안전지도사와 협업하고 있어 모든 분야의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안전분야의 전문성, 지리적 근접성 등의 강점을 살려 신속하고 정확한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산안법과 중처법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등이 지켜야 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 기준 규정 ▶ 사업주의 안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프레스·공작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② 굴착·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③ 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 사업주의 보건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②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③ 환기·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p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margin-top: 10px;">예방적 법규로 사고(산재) 없이 수시 근로감독, 행정처분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운영 주체가 지켜야 하는 안전·보건 확보 등 관리상의 의무 규정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종사자에 대한 의무(법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의무(법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제4조 / 5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p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margin-top: 10px;">형사처벌법적 법규로 사고(산재) 없으면 중대재해처벌법 비대상</p>
처벌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 10억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 위반 5천만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병과 가능)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margin-top: 10px; text-align: center;"> 손해입은 자에게 손해액의 5배이내 배상책임 부과 </div>

중처법 위반시 처벌요건



법 제4·5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시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님**
→ 법 제4·5조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야 처벌**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치사죄”

→ 사업주 / 경영책임자가 법 제4·5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성립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치상죄”

→ 사업주 / 경영책임자가 법 제4·5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가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에 걸리는 경우’ 성립

처벌 조건 → ① 의무위반 ② 고의 의무불이행 ③ 결과발생(사망·부상·질병)
④ 의무위반 / 불이행과 발생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 손해배상 (예)

예 : 35세 남, 평균 임금 300만원, 정년 60세, 사망시 본인과실 20%
*정년이후 5년 일용노임 적용, 상속인 1인, 산재 장의비 전액공제 가정

민사상 손해배상

1. 일실수입 : 345,000,000원
2. 일실퇴직금 : 20,000,000원
3. 위로금 : 92,000,000원

합계 : 457,000,000원

산재보험 보상금액

1. 유족일시금 : 130,000,000원
2. 장의비 : 12,000,000원

합계 : 142,000,000원



사업주 추가 배상금액 : 315,000,000원 (단순 예시)

*사업주 과실(안전배려의무 위반)로 산재 발생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면책 가능**

산재예방 위한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핵심

중처법 위반 기소 사례



대한상공회의소

자료명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일바고	6월 8일(木)자 朝刊부터(통신, 인터넷 등은 6/7(木) 12:00부터)
문의처	고용노동정책팀 유일호 팀장(02-6050-3481), 한진영 대리(3483)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평가... 검찰 송치 82%가 위험성평가 미흡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본 34건 중 28건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위반 ... 사업장내 모든 시설·장비·작업과정에 대한 위험성평가 철저히 나서야
- 법 위반시 처벌대상은 '대표이사'가 원칙이나...

일부 수사경향, 중대재해 예방노력 기울이는 오너에 오히려 불리한 법 적용하는 현실 개선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위험성평가' 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시 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34건의 사건 중 위험성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위반사건이 28건(82.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위반은 20건(58.8%), 제8호(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및 점검)는 17건(50.0%), 제4호(안전보건 예산편성)는 15건(44.1%) 등으로 주요 위반 조항으로 꼽혔다.

<표1> 고용노동부 수사사례 중 중대재해처벌법 조항별 의무위반 현황

구분	조항 내용	백분율(위반건수)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제1호	안전보건 목표, 경영방침 설정	35.3% (12)
	제2호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	11.8% (4)
	제3호	위험성평가 및 필요한 조치	82.4% (28)
	제4호	안전보건 예산편성	44.1% (15)
	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58.8% (20)
	제6호	안전보건 전문인력배치	14.7% (5)
	제7호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41.2% (14)
	제8호	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및 점검	50% (17)
	제9호	도급, 용역, 위탁시 조치	26.5% (9)
시행령 제5조 제1호	의무이행여부 점검, 결과청취	5.9% (2)	

* 하나의 사안에 대해 위반조항이 2개이상 중복된 경우 존재

** '23.1.26. 고용노동부 주관 토론회 통계자료 발취·수정

중처법상 의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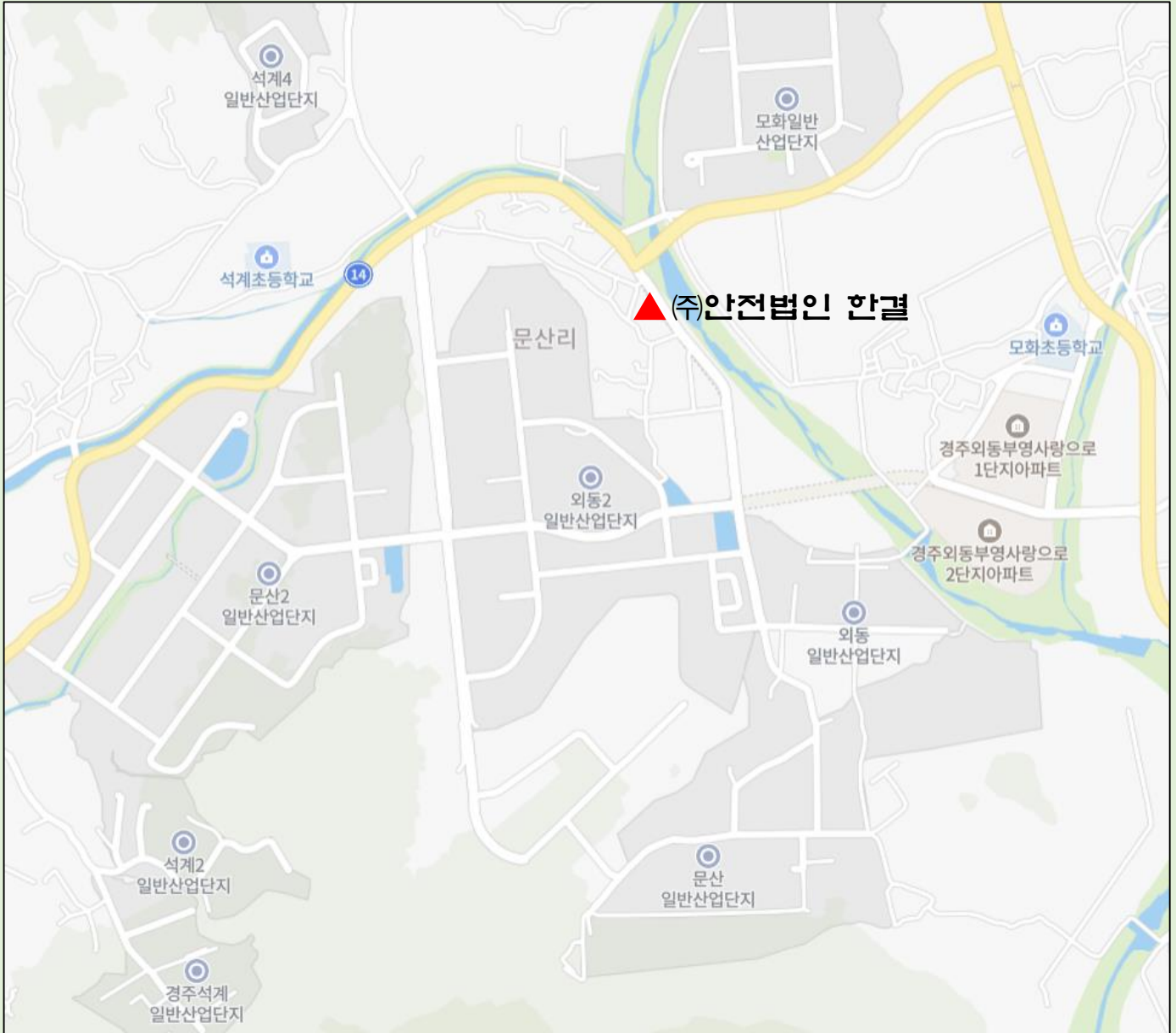



시행령 항목	항목별 결과물	적용 조항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사업장 현황 고려한 구체적 목표 및 방침	시행령 4조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관련 조치
2. 안전·보건 총괄관리 전담조직 운영	▶ 상시근로자 수에 맞는 업무 분장표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필요한 조치 및 반기점검	▶ 위험성평가 및 반기점검 결과	
4. 재해예방위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및 위험개선 위한 예산 편성·집행	▶ 예산 편성현황 및 집행예산 증빙 자료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여건보장 및 반기평가	▶ 각 관계자의 임명, 권한·예산 부여, 반기평가 결과	
6. 안전·보건관리자 등 배치 및 업무시간 보장	▶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관계관 선임, 적정 근무시간	
7. 종사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 이행여부 점검	▶ 종사자 의견청취 / 개선 절차, 반기점검 결과	
8.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및 반기점검	▶ 유해·위험 고려한 비상조치 매뉴얼, 반기점검 결과	
9. 도급·용역·위탁시 수급업체 평가 및 반기점검	▶ 수급업체 평가기준,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및 반기점검 결과	
10.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반기점검	▶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 결과 및 반기점검 결과	시행령 5조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11. 의무 미이행시 인력배치 및 예산 추가 집행 등 의무 이행 조치	▶ 의무 미이행시 인력 추가배치, 예산 추가 편성	
12. 유해·위험작업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반기점검	▶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점검 및 반기점검 결과	
13.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 지시,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	▶ 미실시 교육내용 식별시 조치	

믿고 맡겨 주시면 사업장 환경·특성들을 고려하여
항목별 결과물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 : 경북 경주시 외동읍 우박길 79-5, 302호



(주)안전법인 한결 

전화 : 054) 776-0542 휴대포 010-5077-0542
 팩스 : 054) 776-0549 메일 : wch373@naver.com